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승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
발의자 : 조승환·김성원·유용원

김은혜·정성국·김소희

이성권·서지영·이종욱
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,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지역 재개발, 시설 공사 등 다양한 상황을 휴업사유로 해석하거나 같은 재해 등 상황에서도 학교와 교육청별로 휴교결정을 달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, 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천재지변, 감염병, 재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64조제1항).

초 ·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 · 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 중 “재해 등의”를 “천재지변, 감염병, 재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4조(휴업명령 및 휴교처분) ①</p> <p>관할청은 <u>재해 등의</u> 긴급한 사 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 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.</p>	<p>제64조(휴업명령 및 휴교처분) ①</p> <p>-----<u>천재지변, 감염병, 재 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